

스타트업 계약서 Kit(V.2.0)

신주인수계약서(보통주)

안내사항

- 본 계약서(안)는 보통주를 제 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본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서(안)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주인수계약서(보통주) 소개

신주인수계약서는 보통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작성됩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신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소수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투자자의 다양한 권리와 투자사(이해관계인)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신주는 보통주, 전환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계약서는 보통주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1. 계약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계약서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세요.

2.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본 계약서 및 해설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른 불특정 다수의 기업(또는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와 해설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3. 표준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적 형태의 계약서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조항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최종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용자에게 필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계약서(보통주)

인수인

회사

이해관계인

2000. 00. 00.

신주인수계약서(보통주)

본 신주인수계약(“본 계약”)은 202[]년 []월 []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인수인 0000 주식회사
 [주소]

회사 0000 주식회사
 [주소]

이해관계인 0000 주식회사
 [주소]

이하 인수인, 회사 및 이해관계인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전 문

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통주 []주(“본건 보통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인에게 발행하고, 인수인은 회사가 발행하는 본건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고자 한다(“본건 거래”).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인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건 보통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 (1) 발행할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2) 발행할 주식 총수 : []주
- (3) 1주당 액면가 : 금 []원
- (4) 인수할 주식 총수 : []주
- (5) 1주당 인수금액 : 금 []원
- (6) 주식 총 인수금액: 금 []원
- (7) 주금의 납입기일 : 202[]년 []월 []일

[해설]

인수할 주식의 총수, 1 주당 인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시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합의된 Valuation이 투자 전 Valuation 인지 투자 후 Valuation 인지 명확히 하여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금”이란 투자금을 의미하는데요. 주금의 납입기일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되는 날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제2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 하였을 것
- (2) 본 계약에 규정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 (3)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보통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상 및 계약상 획득하여야 할 정부의 인허가 및 제3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완전히 달성할 것
- (5) 본건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및 기타 인수인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들이 인수인이 만족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되었을 것
- (6) 회사가 본 계약 체결 이후 재무상황 또는 경영상태에 부정적 변동이 없을 것

[해설]

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회사/이해관계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투자(투자금 5억 원 이하) 위와 같이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M&A 에서는 보다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별첨1** 기재 사항들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다만,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는 진술 및 보장사항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회사/이해관계인이 현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으로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회사/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투자 계약서에서는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4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장

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 다만,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언급하고 있는 진술 및 보장사항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인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2) 인수인이 본 계약의 규정을 준수 및 이행하는 것은 주금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인수인의 정관, 내규 또는 관계법령, 법원 및 정부기관 등의 명령, 인수인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 등에 위반되거나 충돌되지 아니한다.

제5조 거래종결 전 의무 및 확약사항

- (1) 회사는 본건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정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 (2) 회사는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 등에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또한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로 한다.

-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3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종결일까지 인수인의 직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기타 대리인이 본건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산, 직원, 계약, 기록, 문서 등 회사에 관한 정보와 업무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5) 인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합리적인 규모와 범위 내에서 인수인의 직원 또는 대리인 등을 회사에 파견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에 최대한 협조한다.

[해설]

투자금 납입하기 전 단계에서 회사/이해관계인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의 조항으로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 (1) 본 계약 체결 후 주금 납입기일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본 조의 적용에 있어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같은 당사자로 본다.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또는 의무 및 확약 사항을 위반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 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후 []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조의 선행조건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사가 해산, 청산을 결의한 경우,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 3 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 (2)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본 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20조(손해배상책임), 제23조(비밀유지), 및 제25조(해석 및 분쟁해결)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된 후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 시점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후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는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7조 거래의 종결

- (1) 인수인은 제1조 제7호에서 정한 주금 납입기일에 제2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계좌에 납입된 날(“거래종결일”)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한다.
- (2) 회사는 거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건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 또는 인수인이 동의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
 2. 인수인이 본건 신주의 주주임을 명시한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동 주주명부의 발행일자는 거래종결일의 다음 날로 함)
 3. 본건 보통주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4.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요청하는 자료
- (3) 회사는 거래종결일의 다음 날까지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거래종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자본금 증자등기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해당 등기부등본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해설]

투자금이 납입된 후 회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제 2 장 거래종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투자금의 사용용도 제한

- (1) 회사는 주식 총 인수금액(“투자금”)을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2. 경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외주비 등)
 - 3.
 - 4.
 - 5.
 6. 기타 협의 사항
- (2)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인수인의 열람 및 등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적절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사용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9조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협의사항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이사회 예정일로부터 []일 전 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 발행(유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발행 또는 부여
 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4. 자본금의 감소
 5. (중요한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들)
 6. (일정한 중요한 사업, 재산,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들)

7. (일정한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들)
8. 기타 협의한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협의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1.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공개(IPO)의 시기, 회사의 주권이 상장될 증권시장, 상장될 주식의 수 및 모집 또는/및 매출가격의 결정, IPO주간사 선정 및 우회 상장 시 조건 및 방법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설]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사전 동의 사항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을 제한할 여지가 다소 있는 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 제출

(1) 회사는 인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2.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4.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5. 제9조에 정한 동의 또는 협의 사항이 발생한 때

(2) 회사는 인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기로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차기 회계연도 추정재무제표
2.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
 - 가. 분기 재무제표
 - 나. 분기 경영보고서
3. 기타보고 : 인수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일
 -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 나. 법인등기부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 수정 법인등기부등본
 - 다.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해설]

투자자가 회사의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조 기술의 이전, 양도 및 겸업금지 등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와 관련되어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새로이 취득할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 (2)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 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주,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인수인이 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시점 []년 후까지 유효하다.
- (4)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다.

[해설]

회사/이해관계인이 기술을 회사를 위해서만 활용하라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제12조 회계 및 업무감사

- (1) 인수인은 회사의 관리 및 본 계약의 충실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수인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2) 인수인이 제(1)항에 의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이 부담한다.
- (3) 인수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3조 이사 지명권

- (1) 인수인은 회사에 (비)상임 이사 []명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인수인이 지명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지명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인수인이 지명한 다른 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자가 선임하는 자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 기업 공개 (IPO)

- (1)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증권시장에 회사 발행의 주식의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기업공개(ICO)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회사가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상장심사요건 중 자기자본, 매출액, 주식분산 등 형식적 심사요건을 갖추거나 갖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인수인으로부터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Exit)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인 기업공개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회사/이해관계인은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 3 장 거래종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인수인의 주식 처분

인수인은 본건 보통주를 포함하여 거래종결 이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자의 경우 펀드가 만료가 되거나, 기타 주식을 처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유롭게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1)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의결권 위임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 (2) 이해관계인이 본 조에 따라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투자를 유치한 후 이해관계인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든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나,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임직원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 인수인의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에게 양도예정일 []일 이전까지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금액 등 양도의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인수인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후 []일 이내에 매수의사 여부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인수인이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매수하여 해당 주식이 잔존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잔존하는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가 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투자자는 본 조항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고, 또한 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게 됩니다.

제18조 인수인의 동반매각요구권 (Tag Along Right)

- (1) 이해관계인이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인수인은 제17조 제1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동반매각요구권 행사 여부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인수인이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에게 통지한 내용과 조건으로 동반매각요구의 대상이 된 인수인 보유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제3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이 이해관계인 및 인수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을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Tag Along 이란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가 “내 지분도 함께 팔아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이해관계인이 대주주로서 주식을 경영권과 동시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역시 함께 매도를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4 장 계약의 종료 등

제19조 계약의 종료

-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종료한다.
1. 당사자들간에 본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2.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 (2)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손해 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인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로부터 그러한 손해와 손실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수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 (2)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권리 행사 및 본 계약의 관련 계약에 따른 인수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회사/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위약금, 위약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1조 계약의 내용 변경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으며, 관습,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2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2) 공지된 정보
-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의 부담

- (1)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본건 신주의 발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 (2)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선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자문사에 대한 수수료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은 해당 당사자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해석 및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제26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제27조 기타 사항

- (1)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본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이행은 다른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포기서에 의해서만 포기가 가능하고, 그러한 포기는 그에 기재된 특정 의무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규정 위반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동일한 규정의 추후 위반 또는 다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3)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0. 00. 00.

인수인 0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회사 0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이해관계인 0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별첨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들은 다음 진술들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납입 기일까지 모든 측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증한다.

[해설]

진술 및 보장의 경우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또는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을 통하여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조 일반 사항

- (1)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그 재산을 소유, 임대,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법, 유효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반 허가 및 승인을 받았다.
-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본 계약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을 적법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3)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당사자이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계약, 증서 또는 문서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중요 재산 또는 영업에 부담을 설정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주금 납입기일 현재 인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칙의 변경, 이사회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였다.

제2조 자본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가 []원인 보통주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모든 기발행 주식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대금은 전부 납입되었다.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주주 명부는 **별첨2**와 같다.
-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또는 회사의 사업 수행 및 회사의 지분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분쟁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및 회사의 지분

구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사채 발행 여부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산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2) 회사가 보유하고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무효,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제기가 우려되는 바가 없다.

제4조 재무상태표 및 채무에 관한 사항

- (1) 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202[].[].[] 기준 재무상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2) 상기 재무상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다.
-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 본 계약체결 및 거래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5조 계약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계약에 관하여 각 계약의 조건을 완전히 정확하게 공개하였으며 그에 관한 모든 문서의 정확한 사본을 인수인에게 제공하였다.
- (2)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은 모두가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며 회사 및 당해 당사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3) 회사는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을 범하고 있지 아니하다.
- (4)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통지의 발송 또는 소정의 시간경과가 있을 경우 동 계약의 해지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을 구성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 (5) 회사는 회사의 주주, 임직원, 기타 특수관계인과 거래(물품 및 용역거래, 금융거래, 기타 여하한 채권채무 발생거래 포함)를 한 사실이 없다.

제6조 법령 위반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1)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본건 신주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고, 인수인의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본건 신주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법령이나 법원에의 소송, 행정절차 등에 의한 제한이나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설립, 재산의 보유와 운용 및 사업의 수행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 민원 등을 제기 받거나 제기가 예상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노동 및 고용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2)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 보수의 지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미지급된 보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3)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금인상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약속, 보증, 합의 등을 한 사실이 없다.
- (4) 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파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고용 또는 해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고소 고발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려되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중 미납된 세금은 없다.
- (2) 회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세액의 납부부족이 주장되거나 과세된 바 없다.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여하한 조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려되는 세무조사 또는 기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9조 완전공개

회사는 인수인이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중요한 서류 및 자료를 인수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본건 거래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제공된 회사의 재무제표, 각종 서류, 문서와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부정확한 기재가 없고, 그러한 서류 또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별첨2. 주주 명부